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
- 2)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 사건의 조사·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 제1항제1호	300	500	1,000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 제1항제2호	300	500	1,000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,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63조 제1항제3호	300	500	1,000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63조 제1항제3호의2	300	500	1,000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 제1항제4호	300	500	1,000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 제1항제5호	300	500	1,000
사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 제1항제6호	300	500	1,000